

개인정보보호규정

제정 2012. 7. 1
개정 2022. 6. 13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교"이라 한다)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본교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 대상 및 범위) ① 적용 대상은 교내 전체(부속기관, 법인포함)로 한다.

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1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
2.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용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3. 1호 또는 2호를 제외한 제3조의 ①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

①의 2. "가명처리"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"개인정보 처리"란 개인정보를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③ "개인정보처리자"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, 영리목적의 사업자, 협회·동창회 등 비영리기관·단체, 개인 등을 말한다.

④ "공공기관"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
⑤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
⑥ "정보주체"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.

제 4 조(개인정보보호의 원칙)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,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,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④개인정보의 수집·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

제 5 조(개인정보의 수집) ①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.

②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이용범위, 정보주체의 권리,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제 6 조(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)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.

제 7 조(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) ①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) ①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,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
2.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

의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5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기타 법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·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다.

④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·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)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교직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3 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

제 10 조(처리정보의 열람) ①처리정보의 열람을 위해 전자계산소를 창구로 지정 운영한다.

②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본교에 청구할 수 있다.

③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,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처리정보의 열람제한)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1.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
 2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승진에 대한 심사, 인센티브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3.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②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 12 조(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) ① 침해신고를 위해 전자계산소를 창구로 지정 운영한다.

②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.

제 4 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 등

제 13 조(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자의 지정) ①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자를 지정 한다.

1.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·시행
2.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·처리
3.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
4.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
5. 기타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 개인정보보호총괄책임자는 교육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 14 조(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의 지정)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한다.

1. 해당 시스템을 이용(단말기제공 등)하는 제반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·감독
2.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에 관한 확인·감독
3. 기타 소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

②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는 행정부서장과 스쿨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15 조(비용부담)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6 조(준용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, 시행규칙」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2.6.13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